

	기존 회칙	회칙 변경안)	변경 사유
<b>제 1 장 총칙</b>			
<b>제 1 조 (목적)</b>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줄기세포 연구분야의 기초 및 응용에 관한 학술발전 및 보급에 기여함으로써 과학과 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b>제 2 조 (명칭)</b>	이 법인은 한국줄기세포학회(이하 본회)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ean Society for Stem Cell Research(약칭 KSSCR)라고 표기한다.		
<b>제 3 조 (사무소 소재지)</b>	본회의 본부는 원칙적으로 회장 소속기관 소재지에 둔다.		
<b>제 4 조 (사업)</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술대회, 심포지움, 강연회 및 학술집담회의 개최.</li> <li>2) 학술회지 및 도서를 비롯한 간행물의 발간.</li> <li>3) 학계, 산업계 및 연구소와의 협력 강화.</li> <li>4) 연수회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li> <li>5) 학술활동의 국제교류.</li> <li>6)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li> <li>7)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타 사업.</li> </ol>		
<b>제 5 조 (분회 및 분과)</b>	본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분회 (지역분회와 학술분과)를 설치할 수 있고, 이의 설치 및 운영은 별도규정으로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p><b>제 6 조</b> (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p>	<p>본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본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p>		
<p><b>제 2 장 회 원</b></p>			
<p><b>제 7 조</b> (회원의 종류 및 자격)</p>	<p>본회 회원은 제 1 조에 명시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종류 및 자격은 다음과 같다.</p> <p>1) 정회원: 의학, 치의학, 수의학, 생명과학, 공학 및 줄기세포 관련분야의 학문을 이수하였거나 또는 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기술 또는 경험을 가진 자.</p> <p>2) 일반회원: 대학, 대학원에서 의학, 치의학, 수의학, 생명과학, 공학 및 줄기세포 관련분야의 학문을 수학하거나 이와 상응하는 자.</p> <p>3) 특별회원: 이사회의 추천을 받고,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기관 또는 산업체.</p> <p>4) 명예회원: 줄기세포분야 연구의 발전과 보급에 공헌이 현저하고, 본 학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p>	<p>본회 회원은 제 1 조에 명시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종류 및 자격은 다음과 같다.</p> <p>1) 정회원: 의학, 치의학, 수의학, 생명과학, 공학 및 줄기세포 관련분야의 학문을 이수하였거나 또는 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기술 또는 경험을 가진 자.</p> <p>2) <b>준회원</b>: 대학, 대학원에서 의학, 치의학, 수의학, 생명과학, 공학 및 줄기세포 관련분야의 학문을 수학하거나 이와 상응하는 자, <b>혹은 박사후과정인 자.</b></p>	<p>2) 일반회원--&gt; 준회원으로 변경: 구분을 명확히, 박사후과정을 준회원에 포함.</p> <p>특별회원 --&gt; 개인이 아닌 기관이므로 혼란을 막기위해 기관회원으로 용어 변경</p> <p>원로회원 추가</p>

		<p>3) 원로회원: 정회원으로 65 세 이상인 자</p> <p>4) 기관회원: 이사회의 추천을 받고,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기관 또는 산업체.</p> <p>5) 명예회원: 줄기세포분야 연구의 발전과 보급에 공헌이 현저하고, 본 학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p>	
<p><b>제 8 조</b> <b>(회원의 권리와 의무)</b></p>	<p>본회의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 (명예회원 제외)하고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단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서 은퇴한 회원(65 세 이상)은 회비를 면제한다.</p>	<p>1) 본회의 회원은 이 회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p> <p>2) 회원은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p> <p>3) 원로회원 및 명예회원은 회비 및 학술대회 등록비를 면제한다.</p>	<p>회원의 권리가 언급이 없어서 기술하고, 회비 납부와 회비 납부 및 학술대회 등록비 면제되는 회원의 범위를 명기</p>
<p><b>제 9 조 (입회)</b></p>	<p>본회에 입회를 위해서는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p>		

<b>제 10 조</b> <b>(회원의 탈퇴)</b>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b>제 11 조</b> <b>(회원의 제명)</b>	본회 회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회원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4) 3 년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회비를 체납한 경우. 이 경우 재입회를 원하고자 하는 자는 미납 년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b>제 3 장 임원</b>			
<b>제 12 조</b> <b>(임원의 종류 및 정수)</b>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 명. 차기회장 1 명.  이사 50 인 이내 (상임이사 및 일반이사 포함)  감사 2 인.		
<b>제 13 조</b> <b>(명예회장)</b>	본회의 설립 및 발전에 혁혁한 공로를 세운 회원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p><b>제 14 조</b> (임원의 임기)</p>	<p>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고, 회장은 중임할 수 없다.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p>	<p>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p>	<p>회장 선임이 임명에서 선출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중임금지 제도 폐지 검토필요. 회장 직무수행후 학회활동에서 퇴임하는 현상을 방지할 필요 있음. (오해를 없애기 위해 현재 회장은 신규규정에 적용되지 않으며, 중임할수 없음으로 이사회 상정하였으나, 이사회 논의후 이 문구는 빼고, 규정을 바꾸기로 함)</p>
<p><b>제 15 조</b> (임원의 선임)</p>	<p>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차기회장은 임기 시작 1 년 전까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li> <li>2) 상임이사는 회장이 선임하고 총회에 보고한다.</li> <li>3) 일반이사는 상임이사 2 인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선임하고 총회에 보고한다.</li> <li>4) 감사는 총회의 추천과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li> </ol>	<p>1) 차기회장은 임기 시작 1 년 전까지 정회원 10 인이상의 추천을 받은 입후보자 중에서 투표에 의해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p>	<p>회장 선출방식을 명문화함.</p>

<p><b>제 16 조</b> (임원의 직무)</p>	<p>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p> <p>2) 회장 유고시에는 차기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차기회장 선출 전에는 이사회에서 직무대행을 결정한다.</p> <p>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p> <p>4) 감사는 매 회계연도의 회무 및 재무에 관한 감사를 시행하고 이를 총회에 발표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되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p>		
<p><b>제 4 장 총회</b></p>			
<p><b>제 17 조</b> (총회의 기능)</p>	<p>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p> <p>1) 해당년도 사업 및 결산의 심의와 인준.</p> <p>2) 차기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와 인준.</p> <p>3) 회장, 차기회장 및 감사의 선출 및 이사의 인준.</p> <p>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p> <p>5)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부의된 사항.</p> <p>6) 기타 중요한 사항.</p>	<p>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p> <p>1) 해당년도 사업 및 결산의 심의와 인준.</p> <p>2) 주요 사업계획</p> <p>3) 회장, 차기회장 인준</p> <p>4) 감사의 선출 및 인준</p> <p>5)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p> <p>6) 상임이사과 이사의 선임에 대한 보고를 받음.</p> <p>7)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부의된 사항.</p> <p>8) 기타 중요한 사항.</p>	<p>2) 차기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와 인준. --&gt; 총회에서 심의 및 인준은 실제 불가능함. 이사회에 권한을 이양하고, 총회에서는 주요사업계획만 논의하는것으로 변경</p> <p>3) 회장, 차기회장, 감사, 상임이사, 이사 선임 및 인준에 대한 내용을 다른 회칙 조항과 일치 시킴</p>

<p><b>제 18 조</b> (총회의 소집)</p>	<p>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년 일회 추계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아래 19 조에 해당될 경우 소집한다.</p> <p>2) 회장은 총회 14 일전 까지 통지서, 본회 간행물 또는 학회 홈페이지에 심의 안건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p>		
<p><b>제 19 조</b> (총회의 의결)</p>	<p>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재적 정회원 10 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p>		
<p><b>제 20 조</b> (총회 소집의 특례)</p>	<p>회장은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p> <p>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p> <p>2) 정회원 10 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p> <p>3)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기타 이유로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나 또는 정회원 10 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p> <p>제 3 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가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한다.</p>		

<p><b>제 21 조</b> (총회의결 제적사유)</p>	<p>회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li> <li>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li> </ol>		
<b>제 5 장 이사회</b>			
<p><b>제 22 조</b> (이사회의 기능)</p>	<p>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회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li> <li>2) 예산, 결산안 및 자산의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li> <li>3) 정관 및 제 규정에 관한사항.</li> <li>4) 임원의 임면.</li> <li>5) 회원의 자격심의 및 동의.</li> <li>6) 표창에 관한 사항.</li> <li>7)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li> <li>8) 기타 중요한 사항.</li> </ol>		
<p><b>제 23 조</b> (이사회의 소집)</p>	<p>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7 일 전까지 회의 개최 목적을 통지서에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거나 이메일로 연락하여야 한다.</p>		



<b>제 24 조</b> <b>(이사회 의결 정족수)</b>	이사회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출석으로 (위임포함)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b>제 25 조</b> <b>(이사회 소집의 특례)</b>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 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이사회 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불가피한 문제로 7 일 이상 이사회 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 2 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b>제 26 조</b> <b>(의결 방법)</b>	이사회 의 의사는 출석 의결을 원칙적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 위임장 또는 이메일로 대신할 수 있다.		
<b>제 27 조</b> <b>(위원회)</b>	이사회 각 부서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시 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장은 이사회 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 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b>제 6 장 재정 및 회계</b>			

<p><b>제 28 조</b> (재정)</p>	<p>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원의 회비.</li> <li>2) 재산에서 생기는 과실금.</li> <li>3) 찬조비.</li> <li>4) 기타 수입.</li> </ol>		
<p><b>제 29 조</b> (잉여금의 처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술회의 개최 및 전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운영 잉여금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으며 본회의 학술연구 등의 고유사업에 전액 사용한다.</li> <li>2) 본회를 해산했을 때 잔여잉여금 및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본회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학술단체에 전액 기증한다.</li> </ol>		
<p><b>제 30 조</b> (재산의 관리)</p>	<p>본 회의의 재산 등의 관리는 회장이 총괄하며 현금은 회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재무담당 상임이사가 이를 관리한다.</p>	<p>본 회의 재산 중 기금을 제외한 현금은 현금은 회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회장이 관리한다.</p>	<p>기금 제외한 금액을 회장이 관리하는것으로 명기</p>
<p><b>제 31 조</b> (회계연도)</p>	<p>본회의 회계연도는 1 월 1 일 부터 12 월 31 일 까지로 한다.</p>	<p>본회의 회계연도는 10 월 1 일 부터 9 월 30 일 까지로 한다.</p>	<p>학회 운영상 추계학회 종료후 회계결산, 감사, 학회 인수인계를 고려하여 회계연도 변경</p>

<p><b>제 32 조</b> (세입세출 예결산)</p>	<p>본회의 세입세출 결산 및 다음 회계년도 예산은 매 회계년도 시작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를 거쳐 감사를 받아야 한다.</p>	<p>본회의 세입세출 결산은 매 회계년도 종료후 한달 이내까지 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음 회계년도 예산은 매 회계년도 시작 세달이내에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현실적인 학회 운영을 고려하여 심의 일정을 변경.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감사가 이루어 질수 있고,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선후 인선이 끝난후에 사업계획이 세워짐을 고려할때 3개월이내 이사회가 열리는것이 적절함.</p>
<p><b>제 33 조 (회비)</b></p>	<p>본회의 연회비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결정하고, 대회비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단, 정회원은 종신회비를 납부할 수 있으며, 종신회비의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p>	<p>본회의 연회비와 대회비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단, 정회원은 종신회비를 납부할 수 있으며, 종신회비의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p>	<p>현실성을 고려하여 회비에 대한 심의를 이사회에서 진행</p>
<p><b>제 34 조 (기금)</b></p>	<p>본회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규정으로 기금을 운영한다.</p>		
<p><b>제 35 조</b> (예산외의 채무부담등)</p>	<p>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p>		
<p><b>제 7 장 보 칙</b></p>			
<p><b>제 36 조 (해산)</b></p>	<p>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 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3 분의 2 이상 찬성으로</p>		

	인준을 받은 후, 해산한다.		
제 37 조 (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참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b>이사회에 문서로 제안하여야 하며</b> , 이사회에서 참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절차를 더 분명히
제 38 조 (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 39 조 부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li> <li>2) 본 정관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li> <li>3) 본 정관은 2007년도 총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li> <li>4) 본 정관은 2012년 4월 5일 임시총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li> </ul>	5) 본 정관은 2014년 2월 11일 임시총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부칙 추가